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 (朝墺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

민 회 수*

머리말
1. 조선-오스트리아 간 통상조약 체결의 배경
 1) 淸의 내정간섭과 조선의 외교다변화 정책
 2) 오스트리아의 러시아 견제와 자국 상인의 보호 문제
2. 조약 체결 협상과 '屬邦照會' 문제의 대두
3. 조약의 체결 및 비준과 稱帝 문제
 1) 협상의 타결과 속방조회의 처리
 2) 비준 과정과 稱帝 논의
맺음말

초록: 1892년에 이루어진 조선-오스트리아 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의 체결은, 反淸自主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한 수단으로서 가능하면 여러 서양 제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려는 조선 측의 대외정책 기조와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오스트리아의 대외정책 기조가 상호 접점을 이루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오스트리아 상인에 대한 배려라는 목적 하에 추진되었다.

조약 체결의 교섭 과정은 청의 내정간섭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막바지에 오스트리아 측에서 屬邦照會, 곧 '조선은 청의 屬邦이나 內治와 外交는 自主'라는 내용의 선언문 수령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청측은 조약 협상의 파기를 무릅쓰고라도 속방조회 수령을 관철시키라고 지시하였는데, 조선 측에서는 겉으로는 청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끝내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약의 비준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측과 격식을 맞추기 위해 조선 국왕의 稱帝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황제국의 격식에 맞는 각종 용어들의 사용에서 그 흔적이 보인다.

이상에서 조선-오스트리아 간 통상조약의 체결은 1890년대 초반 조선이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추진한 反淸自主化 정책의 경향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즉 이전 시기에 행했던 여러 차례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反淸政策이 모조리 청의 압력과 방해에 직면하여 실패하자, 보다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으며 간접적인 형태, 곧 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가시적 성과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실리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오스트리아, 통상조약, 속방조회(屬邦照會), 비준, 칭제(稱帝), 반청자주(反淸自主)

머 리 말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왕조는 동아시아 기존의 국제질서인 事大秩序와는 이질적인 萬國公法體制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1]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서구 제국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형식인 '조약(條約; Treaty)'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조선은 1882년 미국과의 수호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구미 각국들과 근대적인 조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국제무대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2년 같은 해에 그와 거의 동시에 영국·독일과도 역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2년 뒤인 1884년에는 이탈리아·러시아와, 그 2년 뒤인 1886년에는 프랑스와 근대적인 조약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조약 체결을 전후로 조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국가들로서, 그 조약 체결의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2]

---

1) 만국공법의 본질 및 동아시아·조선 전래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문헌들이 대표적으로 참조된다.
李光麟, 1982「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東亞硏究』 1.
김용구, 1997「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 나남출판.
김세민, 2002「韓國 近代史와 萬國公法』, 경인문화사.
吳瑛燮, 2004『개항 후 만국공법 인식의 추이」,「東方學志』 124.
강상규, 2007「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

2) 조선의 서양 제국들과의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서양 각국들과 수교한 지 100년이 되던 해에 나온 수교 100년 기념 연구서들을 들 수 있다(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 편, 1982「한미수교100년사』; 韓國史硏究協議會 편, 1984「韓英修交 100年史』·「韓獨修

그러나 이후에 조선과 서구 제국들이 체결한 조약들, 즉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1892) 및 조선-벨기에 수호통상조약(1901), 조선-덴마크 수호통상조약(1902) 등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의 일자 및 책임 담당자가 누구인지 정도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협상 및 조약 체결의 과정 등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형편이다.[3] 이렇게 된 이유로는, 일단 이들 국가들이 앞서 조약을 체결한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과 비교하여 조선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서구 제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약의 형식 및 내용상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특성 및 그것의 변화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그 결과로서 이후에 체결한 상기의 조약들에서는 이전의 조약들과 비교해볼 때 그다지 특기할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들에 대한 연구의 부진함을 설명해주는 이유가 될 것이다. 관련 사료의 상대적인 빈약함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1890년대 이후 체결된 조약들이라고 해서 역사적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항기 조선의 정치적 상황 자체가 짧은 시간을 주기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국내 정치상황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이들 조약들이 갖는 특수한 면모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벨기에 및 덴마크와의 수호통상조약은 이전의 그것들과는 달리 조선이 형식상 중국의 속방에서 벗어나 황제국체제로 탈바꿈한 뒤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점에서 조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 이전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살펴볼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4]

交 100年史』·「韓露關係 100年史」; 韓國史硏究協議會 편, 1986 「韓佛修交 100年史』). 그 밖에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경우 사료도 풍부하고 연구도 가장 잘 되어 있으며(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朴日根, 1981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 一潮閣;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硏究: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檀國大學校 出版部 및 2005 「한국, 미국과의 첫만남』, 고즈윈; 金源模, 2003 「開化期 韓美 交涉關係史』, 단국대학교출판부; 柳永益, 1983 「韓美條約(1882)과 初期 韓美關係의 展開」, 「東洋學』 13 이외에 많은 업적들이 있다.), 그 외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 기타 여러 국가들의 경우도 연구 성과가 다수 존재한다.

3) 해당 조약들에 대한 간단한 해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제3편 제1장.
禹澈九, 2000 「유럽 각국과의 조약 체결」, 「한국사』 37, 국사편찬위원회, 316면.

4)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기존에 조선이 청의 속방일 때에 서구제국과 조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러한 국내 정치상황과의 연계라는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의 체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5] 오스트리아 역시 조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사료의 양도 부족하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눈을 당시의 서유럽으로 돌려보면, 오스트리아는 당시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조선과 오스트리아간의 외교관계 수립에는 일정정도 국제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경우, 당시 조선이 처한 청의 강력한 내정간섭이라는 상황과 연계시켜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서구제국들과의 조약관계는 전통적인 중국과의 상하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서양과의 조약 체결이라는 행위 자체가 청의 간섭에 대한 돌파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조선-오스트리아 조약 체결의 이면에 존재하는 국제·국내정치적 함의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1. 조선-오스트리아 간 통상조약 체결의 배경

1) 淸의 내정간섭과 조선의 외교다변화 정책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인 사대질서는 형식 및 의례상 중국을 중심으로 한 階序的·수직적인 국제관계를 그 특징으로 하지만,[6]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과

에는 항상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알리는 照會를 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조선국왕이 상대국 원수에게 보냈는데, 1897년 高宗이 황제로 즉위하고 1899년 조선과 청이 '韓淸通商條約'을 맺어 국제법상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결된 벨기에·덴마크와의 조약의 경우 屬邦照會는 手交되지 않았다.

5) 조선-오스트리아 조약 체결 자체를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으며, 다음의 논문들에서 그 일부가 언급되어 있다.
權赫秀, 2000「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硏究」, 백산자료원, 265-266면.
韓哲昊, 2001「開化期(1887~1894) 駐日 朝鮮公使의 파견과 외교 활동」,「韓國文化」27, 313-315면.

6) 사대질서 하에서의 조공-책봉관계에 따른 각종 격식의 경우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정에 있어서는 중국이 제후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조공국의 자율권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었다. 조선왕조가 명·청과 맺어온 사대관계 역시 대체로 그러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조선-중국과의 관계는 만국공법 질서라는 새로운 세계체제가 사대질서를 잠식함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사대질서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청은 조선과의 의례적 상하관계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갖게 되었고[7], 이것은 구체적으로 1882년 壬午軍亂의 발발 이후 조선으로의 군대 파견 및 주둔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조선이 중국의 屬邦임을 명문화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1882. 8. 23)이 체결되었고, 서구 제국 어디와의 조약에서도 전무후무했던 상인들의 내륙영업 허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8] 조선은 본격적으로 청의 정치·경제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

청의 간섭의 강도는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1885년 10월에 袁世凱가 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을 가지고 조선에 부임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北洋大臣 李鴻章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원세개는 속칭 '袁代人'으로 불리면서 '監國大臣', '朝鮮之王'으로 비유되는 등 위협과 힐책 등의 수단으로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였는데, 그는 조·러 밀약사건 및 외국에의 공사파견 등 조선이 反淸自主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려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며 그때마다 강압과 협박 등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국왕 고종의 폐위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조선정부 내에 자파세력을 부식시켜 청의 이해를 대변하게 하면서 조선 내의

全海宗, 1970『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金基德, 1997「고려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國史館論叢』78.
한편 사대질서 하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의 등급 및 격식에 대해서는 김경록, 2005「朝鮮後期 事大文書의 종류와 성격」,『韓國文化』35를 참조할 것.

7) 청의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駐日淸國公使 何如璋이 1880년 조선의 미국과의 조약 체결 방침이 확정되자 청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본국에 보고서 형식으로 올린「主持朝鮮外交議」를 들 수 있다(『淸季中日韓關係史料』제2권 #342-(1), 光緖 6년 10월 16일, 439b-442a면. 이하 #는 자료에 나타나는 문건 번호이고 a는 해당 숫자의 면수의 윗단, b는 아랫단을 의미함.).

8) 이러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章程의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서울을 開市場으로 한다는 내용 및 지방관의 執照를 전제로 한 내지통상권에 대한 규정), 이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의 시장은 서울에서 벽촌에 이르기까지 외국상인에게 개방되고 말았다(李炳天, 1985「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제1장 및 具仙姬, 1999『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한국사』38, 국사편찬위원회, 330면 참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자주국으로서의 체면은 당연히 계속하여 손상되게 되었으며, 청에 의한 경제적 침탈 역시 가속화되었다.

한편 새롭고 낯선 만국공법질서라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함에 있어서 청을 동반자 내지는 협조자로 여기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 청이 수백 년 이상의 사대질서 역사 속에서 불문율처럼 작용했던 내정간섭 불허의 원칙을 깬 것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과 같았다. 조선은 원래 서구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 청의 권고 및 주선에 따라 미국 등과 조약을 체결했으며,[9] 심지어 조약 체결의 과정 자체를 보더라도 조약 체결의 한 당사자인 조선의 대표로 협상에 임한 것은 조선 측 관리가 아닌 청의 北洋大臣 李鴻章이었으니,[10] 조선은 적어도 임오군란 이전까지는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만국공법질서에 편입하려는 과도적 전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11]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청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조선에게 선택의 길은 기존의 질서와 결별한 뒤 새로운 세계질서로 완전히 갈아타는 것 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조선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청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서구 열강들과 직접 교섭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

9) 이에 대해서는 宋炳基, 앞의 책 및 權錫奉 1963「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歷史學報」21 참조.

10) 1882년에 조선과 서구 제국들과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조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청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물론 조선이 청을 신뢰했고 청 역시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876년 일본과의 修好條規 체결 이래로 급격히 악화된 조야의 서양에 대한 감정이라는 요소도 크게 작용하였다. 일례로 조선정부는 일본의 선진적 서구문물 수용 실태를 견학할 임무를 부여한 紳士遊覽團(朝士視察團) 일행에게 '東萊府 暗行御史'라는 위장 직책을 내렸는데(許東賢, 2000「近代韓日關係史硏究」, 國學資料院, 15면), 이는 당시 사회 분위기가 서양과 한패거리로 낙인찍힌 일본에 서구 문물을 배우러 사절단을 파견한다는 사실을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일·반서구 감정이 극도로 팽배해있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11) 이와 관련하여, 임오군란 이전에 고종이 魚允重을 청에 파견하면서 派使駐京 및 事大使行 폐지를 타진한 사실을 들어 이미 고종이 청과의 전통적 사대관계 청산을 결심했다는 견해가 있다(具仙姬, 앞의 논문, 324-325면). 그러나 어윤중이 중국 측 사신과의 필담에서 '派使駐京 및 事大使行 폐지는 조선정부의 更張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전통적 사대관계의 변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淸季中日韓關係史料」제2권 #417-(6), 光緖 8년 4월 22일, 601b면)에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上國, 즉 유사시에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설정해 놓되 다만 그 형식적 관계를 새로운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재정립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조선정부가 나름대로 대외정책에 있어서 묘수를 짜낸 결과였겠지만, 청측으로부터는 조선이 자국을 경시한다는 의심을 사게 되고, 결국 임오군란 이후 청의 실질적 속방화 정책 추진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종은 측근세력인 개화파를 일본에 파견하여 영국 등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종래에는 청이 제시한 『朝鮮策略』이라는 외교 원칙에 따라 防俄論, 곧 견제의 대상으로 여기던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1884년에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고,[12] 같은 해에 이탈리아와도 조약을 체결[13]하되 모두 청의 중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甲申政變의 실패에 따라 청의 간섭이 점증하면서 조선의 대청정책 역시 보다 反淸 쪽으로 경도되게 되었다. 청국 견제를 위한 러시아와의 접촉은 비록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1885~1886년에 걸친 제1·2차 조·러 밀약사건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14] 대외적으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등지에 常駐使節 파견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원세개 등의 간섭이 극도로 심하여 '另約三端'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바가 좌절되자 원세개의 소환을 추진하는 등 고종과 측근세력들의 反淸運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反淸自主化 운동의 차원에서 시행되던 당시의 대외정책의 기조 중 하나가 이른바 외교다변화정책이었다. 즉 가급적이면 많은 서구 제국들과 조약 관계를 맺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서구국가와의 조약체결이 기본적으로 사대질서와는 달리 국가들 간의 형식상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만국공법 세계체제의 속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보다 많은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면 할수록 청국과의 전통적 상하관계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86년경이 되면 고종은 이러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라 선교의 자유문제로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하던 프랑스와의 조약체결 문제도 양보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15] 1886년 朝·佛 通商條約의 체결은 이러한 정책의 산물이었다.

---

12)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는 崔文衡, 1984 『韓露修交의 背景과 經緯」, 「韓露關係 100年史』, 韓國史硏究協議會 편 참조.

13) 조선은 이탈리아와 1884년 6월 26일자로 13개 조항으로 된 修好通商條約과 附屬通商章程, 稅則 및 稅則章程을 조인하였다. 조선 측 전권대표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인 金炳始였으며, 이탈리아 측 대표는 페르지난드 데 루카(Ferd. de Luca)였고, 비준은 1886년 7월 24일 교환되었다. 그리고 1885년 7월 10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 金允植과 이탈리아측 대표인 해군제독 엔리코 아치우니(Enrico Acciuni) 사이에 修好通商條約 續約이 체결되었다(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제3편 제1장; 禹澈九, 앞의 논문, 316면 참조).

14) 조·러밀약에 대해서는 具仙熙, 1999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혜안, 99-105면 참조.

이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당시 외국인 고문관으로 활동했던 데니(O.N. Denny; 德尼)였다. 그는 청측에서 원래 내정간섭을 지휘하기 위해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穆麟德)의 후임으로 추천해서 외국인 고문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청의 과도한 내정간섭에 염증을 느끼고 反淸的 입장으로 돌아선 뒤 조선의 反淸運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며 이를 주도하였던 인물이었다. 그가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된 뒤 미국 총영사였던 프레이저(Everett Frazer)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외에 향후 2~3개 국가들과 추가로 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는 언급이 있다.[16] 따라서 당시 조선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청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청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외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다변화정책을 방법론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것이 청국의 간섭 및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오스트리아의 러시아 견제와 자국 상인의 보호 문제

한편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복잡다단한 열강과의 국제관계 문제였다. 오스트리아는 1814년 나폴레옹 전쟁의 수습을 위해 열린 빈(Wien) 회의의 개최 당사국으로서, 이후 이른바 '메테르니히(Metternich) 체제'로 불리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주역으로서 오랫동안 유럽 최대의 강대국들 중 하나로 행세하였다. 이후 1866년 독일 연방의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그 세력이 줄어들긴 했으나, 이후에도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유럽 국제정치의 중심 국가들 중 하나였다.[17] 이후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유럽의 강대국이 된 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Bismarck)가 주도하여 독일 제국이 성립된 이후, 비스마르크는 유럽 정치질서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의 고립이라는 두 가지 기본 목적 하에

15) 金賢淑, 1999「韓國 近代 西洋人 顧問官 硏究(1882~1904)」,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75면.

16)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1『데니문서』Letter No.40「Denny to Frazer」1886. 11. 14.

17) 오스트리아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뒤 1867년 10월에 국내 정치제도의 개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이중 군주국(Dual Monarchy)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원래 다양한 민족과 지방들로 구성되었는데, 헝가리 지방은 그중 하나로 오랫동안 자치와 독립을 갈망해왔다. 그러한 헝가리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결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같은 황제를 모시고 외교·군사·전쟁 등 3개 분야는 단일화되지만 각각 독자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체제가 성립되게 된 것이다(김용구, 2006「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28-129면.).

오스트리아와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양국동맹, Dual Alliance; 1879년 10월 7일), 이 동맹관계는 이후 비스마르크 체제의 기본적인 축을 형성하며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기본적으로 이어지게 된다.[18]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독일과의 동맹관계는 든든한 배경을 얻은 것과 같았지만, 한편으로 오랜 시간동안 경계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감시의 눈을 늦출 수 없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1849년 헝가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러시아가 그 진압을 지원하는 등 한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1853~56년에 걸쳐 벌어진 이른바 '크림(Krym)' 전쟁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영국·프랑스와 한 편에 서서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된 이래 이들 간에는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 내리게 되고, 이 역시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지속되었다.[19] 물론 비스마르크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여러 차례 추진하기도 하였으니, 1881년 독일-오스트리아-러시아의 3帝 협상(Dreikaiserbund)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체제에 지나지 않았으며, 1884년 1차 갱신되었으나 1887년에 종료되었는데, 마침 그 해 7월에 불가리아 의회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 오스트리아 성향의 인물인 페르디난트(Ferdinand of Saxe-Coburg)를 불가리아 공으로 선임하자, 러시아에서는 이를 계기로 강력한 반 오스트리아 분위기가 대두되면서 3제 협상에서 자신들이 오스트리아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비판론이 일게 되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3제 협상은 연장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비스마르크가 러시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독일과 러시아 두 나라만이 이른바 재보장조약(Reinsurance Treaty, 1887년 6월 18일)을 맺는 것으로 귀결되었다[20].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서 언급했던 이른바 '1887년의 불가리아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유럽 전역에 돌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오스트리아는 영국이 주도한 이른바 '제2차 지중해 협정'에 이탈리아와 더불어 당사국으로 참여하였다[21]. 이러한 과정들

18) 김용구, 앞의 책, 149면.

19) 위의 책, 260면.

20) 위의 책, 162-163면.

21) 제1차 지중해 협정은 同年 2월에 영국의 솔즈베리(Salisbury) 외상의 주도 하에 영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각서 교환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3월에 각서 교환에 참여한 바 있

을 통해 1880년대 말에 이르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되게 된다.[22]

이렇게 188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견제가 만연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영향권은 동아시아에도 걸쳐 있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駐日 오스트리아 공사관에서 정기적으로 오스트리아 정부에 보내던 동아시아 정치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23]. 이 기록에서도 오스트리아측은 1880년대 후반이 되면 극동 아시아의 정세와 연관지어 러시아의 동향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오스트리아 공사관 측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조선과의 관계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조선 측의 引俄拒淸, 즉 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이 한다는 외교 전략과 아울러 러시아 측 역시 그에 부응해 1888년 陸路通商章程을 별도로 체결하는 등[24] 친조선 행보를 가속화하여 양국이 1880년대 중반 이후 부쩍 밀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889년 주일공사인 폰 지볼트(von Siebold)가 오스트리아의 외상인 칼노키 백작(Kálnoky von Köröspatak)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조·러간 陸路通商章程의 체결로 인해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국이 되었다는 헛소문이 퍼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볼 때 반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며, 그러한 소문과 같이 가공할

었다. 제2차 협정 역시 솔즈베리 외상의 작품이었는데, 이 각서 교환은 1892년 로즈베리(Rosebery)가 외상이 되면서 종료되었다(위의 책, 163-164면).

22) 이러한 긴장관계는 189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J.M. Roberts, 1989 *Europe 1880~1945; 2nd Edition*, LONGMAN, p. 121).

2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옮김, 1992 「韓國近代史에 對한 資料 —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1885~1913)」, 신원문화사. 이 책은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관에서 1885년에서 1913년 사이에 본국 외무성에 올린 보고서를 발췌·번역한 것이다. 해당 문서의 원본은 오스트리아의 국립문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와의 대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 문서에 대한 간략한 해제는 펜들러(Karoly Fendler), 1990 「19C와 20C 轉換期의 韓國에 관한 오스트리아·헝가리 外交資料」, 「韓國 北方關係의 政治外交史的 再照明: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 제6집」 참조.

24)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56-80면 참조.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내다보았다.[25] 또한 지볼트의 후임으로 주일공사를 맡은 비겔레벤 남작(Barron Roger de Biegeleben; 洛蕊特畢格勒本)이 "청·러·일 3국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조선은 그 독특한 국권상의 지위나 정치 상황으로 보건대 '동아시아의 불가리아'라는 별명에 걸맞는다."고 평가하는 대목에 이르면, 불가리아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긴장관계에 놓인 오스트리아가 조선이 러시아 등 열강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는 인상마저 준다.[26] 요컨대 러시아와 극도의 대립관계에 있던 1880년대 말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 조선이 러시아와 급속도로 친해지는 상황은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동기는 자국과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거시적 차원과는 별도로 조선에 도항하는 자국 인민들의 보호라는 미시적 동기 또한 오스트리아가 조선과 조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76년 개항 이래 조선 내에는 開港場을 중심으로 각국의 租界地 및 居留地 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곳으로 각 나라의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 몰려왔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감독 및 관리 등의 업무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공사관·영사관이 챙길 몫이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경우 조선과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 상인이 조선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즉 1888년 1월에 인천항에 들어온 오스트리아 상인이 조계지의 地契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오스트리아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이므로 仁川港 監理署에서 독단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1월 17일자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각국 공사 및 총영사와 회동하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27] 거의 1주일 정도가 지난 뒤인 23일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답신을 보내기를, 독일공사관에서 조선 내 오스트리

2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옮김, 앞의 책, 76-77면 「1889년도 외교 보고서」 No=9, 1889. 2. 10, 폰 지볼트 → 칼노키 백작.

2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옮김, 앞의 책 85-87면 「1890년도 외교 보고서」 No=45, 1890. 6. 23, 비겔레벤 → 칼노키 백작. 물론 이러한 별명은 그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每日新聞』에서 불가리아가 세계의 커다란 골칫거리라는 의미에서 조선을 빗대 한 말이었다(앞의 책, 74면). 그러나 이러한 비유를 인용하며 조선에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모습은 당시 오스트리아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 「仁川港關草」(奎18075) 제1책, 1888년 1월 17일, 「仁川港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아인은 독일 소관이라고 조회하여 왔으므로 독일의 예에 준하여 지계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28] 이후로도 오스트리아 상인의 지계 발급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독일의 예에 준하게 처리되었으니,[29] 오스트리아 상인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상업 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으려면 하루빨리 자국이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어 상업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있어 1880년대 후반의 상황은 러시아와의 긴장관계가 절정에 달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조선과 러시아의 밀착을 경계해야 했으며, 동시에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자국 상인들의 상업 활동에 대한 보호라는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약 체결 협상과 '屬邦照會' 문제의 대두

오스트리아가 조선에 처음으로 조약 체결을 타진하며 접촉한 것이 사료 상에 확인되는 것은 1890년 1월 22일이다.[30] 이날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駐日公使 金嘉鎭[31]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오스트리아의 조선과의 조약 체결 타진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김가진의 답변에 따르면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관의 서기관이 일전에 공사대리를 맡고 있을 때 이러한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32]

---

28) 「仁川港關草」(奎18075) 제1책, 1888년 1월 23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仁川港」.

29) 「仁川港關草」(奎18075) 제1책, 1888년 4월 14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仁川港」 및 제3책. 1890년 閏 2월 5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仁川港」.

30) 「高宗實錄」·「承政院日記」 高宗 27년 1월 22일 癸亥.

31) 김가진의 일본 파견은 박정양의 주미전권공사 파견에 앞서 이루어졌다. 즉 조선정부는 데니 등의 건의에 의해 외국에 공사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 청과 원세개의 견제를 대비하여 우선 1887년 5월 16일에 閔泳駿을 駐日辦理大臣, 김가진을 駐日參贊官으로 임명·파견하였고(「日省錄」 高宗 24년 5월 16일), 원세개로부터 별 반응이 없자 본격적으로 박정양 등의 파견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후 박정양은 청의 압력에 결국 귀국했으며, 민영준은 아예 國書만 奉呈하고 파견 한 달 만에 귀국해버리자 이후 김가진은 일본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주일공사관을 이끌어나가게 되었으며 1888년 10월에는 직책도 참찬관에서 공사로 승진하였다. 김가진의 일본 내 활동은 공공연한 反淸運動의 성격을 지닌 것이 많았다고 한다(吳瑛燮, 2003 「東農 金嘉鎭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韓國思想史學」 20, 266-267면).

그는 예비 체약 문서를 만들어놓자고 까지 하였으나 이후로 다시 그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다만 金嘉鎭이 귀국할 때에 그 해 봄경에 조선을 유람하며 풍토를 한번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미 1890년 이전부터 오스트리아가 조선과의 조약체결 의사를 가지고 접근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890년 8월 10일에 오스트리아의 해군 제독인 기텔(Gittel; 吉達) 백작이 오스트리아 황제의 명을 받아 인천항으로 조선에 입국하였고 이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는 主事를 파견하여 서울로 영접하였는데,[33] 조선 방문의 목적은 통상조약 체결에 대한 공식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4]

이후 김가진은 駐箚日本辦理大臣(주일공사)의 직함을 유지한 채로 일본으로 귀임하지 않고 동년 2월에 參議內務府使로서 驪州牧使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1891년 3월에 다시 安東大護府使로 전출되었다.[35] 그러다가 5월 13일에 歸任의 명을 받게 되고,[36] 7월 6일에 안동에서 일본을 향해 떠나 14일 만에 東京에 도착하였다.[37] 김가진의 이번 일본 파견은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협상 이외에도 조선의 중립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논의하는 일 등의 임무를 띠고 이루어진 것인데,[38] 이전까지 조선이 反淸政策을 펼치다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 사실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인지 이번 김가진의 일본행은 청측이 알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39]

김가진은 일본에서 열차편으로 東京으로 갈 때 우연히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와 대면하였는데, 그는 마침 중국에 외교 업무차 가는 길이었다. 駐日朝鮮公館에 도

---

32) 여기서 말하는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관의 서기관은 앞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비젤레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89년경부터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 폰 지볼트의 후임으로 駐日代理公使의 임무를 맡다가 駐日公使로 승격되었으며, 후술하겠지만 조선측 駐日代理公使 權在衡과 더불어 조선-오스트리아 조약 체결 협상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33) 「統署日記」 高宗 27년 庚寅 8월 11일; 「舊韓國外交文書」 제15권, 「德案」 1, 385면; 「京畿關草」 (奎18067) 제4책, 1890년 8월 11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畿營」.

34)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2), 光緖 18년 3월 11일, 2964b면.

35) 「承政院日記」 高宗 28년 3월 23일.

36) 「承政院日記」 高宗 28년 5월 13일.

37) 「承政院日記」 高宗 28년 9월 21일.

38) Spencer J. Palmer, 1963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The Period of Growing Influ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250-251.

39) 심지어 김가진의 일본행은 관보에조차도 기재되지 않을 정도였다(*Ibid.*, pp.250-251). 물론 후술하겠지만 이후 권재형이 협상담당자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비밀주의는 계속되었다.

착해보니 오스트리아 공사가 남겨 놓은 서신 및 서양 말로 된 條約 草稿 1본이 있었다. 서신의 내용은 중국에 외교업무 차 출장가기 때문에 두서너 달 뒤에야 돌아올 수 있으니, 우선 그 사이에 조약 초고를 조선 정부에 보내 그 可否를 정하고, 오스트리아 공사가 일본으로 귀임한 뒤에 김가진과 회동하여 조약 체결을 확정하자는 것이었다. 김가진은 오스트리아 공사가 자신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일로 갑자기 다른 곳에 가면서 두서너 달 뒤에나 돌아온다고 하며 단지 조약 초본만 보냈다는 사실을 국권에 대한 무시로 판단하고, 그 말을 따라서 오스트리아 공사가 귀임하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조약 체결에 대해 의논한 다음 조선으로 귀국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기에 오스트리아 공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해당 조약 초고를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김가진이 동년 9월 21일 復命할 때 고종은 오스트리아 공사의 부재 여부에 대해 재차 물으며 관심을 나타내었다.[40]

김가진은 이후 1893년 정식으로 주일공사 직에서 체직되기까지 국내의 여러 직책을 전전하며 끝내 일본으로 귀임하지 못했으며,[41] 따라서 조약 체결의 남은 과정은 주일공사 대리인 權在衡에 의해 승계되게 되었다. 권재형은 일찍이 釜山 監理署 書記官 및 仁川港 幇判通商事務 등을 역임하며 외교관련 관서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電報局 主事로 있다가 1891년 4월 20일부로 駐日 辦理大臣 書記官 李鶴圭의 후임으로 金夏英과 더불어 임명되었고[42] 이후 소속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로 바뀌었다.[43] 따라서 김가진이 7월 6일에 일본 東京으로 귀임할 때 권재형 역시 서기관 자격으로 동행하게 되었다.[44] 이후 김가진이 귀국하여 복명한 뒤 일본으로 복귀하지 못하자 자연스럽게 권재형이 代理公使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오스트리아와의 협상 문제 역시 그가 계승하게 되었다.

이후 駐日 代理公使 권재형은 김가진의 요청으로 1891년 11월 24일자로 국왕 고종으로부터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 관련 전권위임장을 받게 되고 동시에 협상의 지원을 위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成翊泳·金鶴羽 두 명의 주사가 파

40) 『承政院日記』 高宗 28년 9월 21일.

41) 김가진이 이 시기에 한직을 전전하게 된 것은 閔氏戚族과의 불화가 그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吳瑛燮, 앞의 논문 268면).

42) 『承政院日記』 高宗 28년 4월 19일.

43) 『承政院日記』 高宗 28년 6월 8일.

44) 『承政院日記』 高宗 28년 5월 28일.

견되었다.[45]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 비겔레벤과의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니,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권재형이 보낸 조약 초안의 내용 중 제1관 제2조 및 제4관 제6조에 문구를 추가하고 제11관 제1조를 삭제하며, 관세의 문제는 과거 프랑스와의 조약체결 당시의 예를 따라 오스트리아의 안을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경우가 있을 뿐[46] 협상 과정 자체에서 별다른 잡음이 일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조약 내용의 실질적 협상이 종료된 후에 일어났다.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서구 제국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면 항상 '屬邦照會'라는 것을 상대국 원수에게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것은 조선이 청의 속방이되 內治와 外交는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선언을 담은 문서였다. 만국공법체제라는 형식상의 국가 간 평등체제 하에서 청의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 이 조치는, 원래 1882년에 조선이 서구 제국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려 할 때 청이 조약 전문 내에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려다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만들어낸 방안으로서,[47] 이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이번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에 있어서도 고종은 권재형을 협상 전권대표로 임명함과 더불어 역시 같은 내용의 조회를 보냈으며,[48] 권재형은 1892년 2월 3일에 오스트리아 대표 비겔레벤을 방문하여 해당 조회를 전달하였다.[49]

---

45) 『舊韓國外交文書』 제2권, 『日案』 2, #2010·#2011·#2028.

46) 구체적으로 추가된 문구나 빠진 조항이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統署日記』 高宗 29년 壬辰 1월 12일).

47) 조미수호조약 협상시 청측의 속방조관 삽입 시도로부터 속방조회 발송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宋炳基, 1984 『金允植·李鴻章의 保定·天津會談』 (上)·(下), 『東方學志』 44·45 참조.

48) 속방조회의 발행 일자는 1892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데(『國照會謄錄』(古5710-11) 『送奧國照會』 참조), 아마도 이 날 실제로 발행되어 권재형에게 전해진 것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전의 미국·영국 등과의 조약 체결 시 조회를 보낼 경우에도 조회의 발행일자와 실제 전달일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월 25일자로 권재형이 전권대표로 임명됨과 동시에 협상 업무 보조를 위해 2인의 주사가 파견되었는데, 만약 조회가 11월 25일자로 발행되었다면 2명의 주사가 권재형에게 분명히 해당 조회를 전달했을 것이나, 이들의 일본 도착 후 권재형이 전권위임장 수령의 확인차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보낸 보고에는 조회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舊韓國外交文書』 제2권, 『日案』 2, #2028).

그런데 조회와 함께 전달된 영어번역본을 읽어본 비겔레벤은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권재형이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조선국왕의 친서라고 가져온 문서에 대해 비겔레벤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우호적인 안부편지의 내용이었던 것 같으나, 그 내용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순전히 사무적인 내용만을 극히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청에 대한 조선의 國法上 관계와 관련하여 조선의 권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는 권재형에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대표로서 이 문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우선 이것이 군주들의 교류 예절에 어긋나며, 그 내용 역시 조선의 권리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조선의 이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50] 따라서 그는 오스트리아측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가 무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의 受發을 군주가 군주에게 보내는 형식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변경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51]. 비겔레벤은 2월 10일자로 이 조회를 권재형에게 돌려보내며 공식적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52]

이에 대해 권재형은 조선이 오스트리아에 앞서 독일·프랑스 등 여타의 서구 제

---

49)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2), 光緖 18년 3월 11일, 2965a면.

50)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 확인을 목표로 만든 관례인 속방조회에 대해 비겔레벤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라면, 우선 속방조회의 영어번역문의 내용이 원본과 비교하여 미묘한 뉘앙스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 시 보낸 속방조회의 영어번역문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은 여타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 시 보낸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게 보낸 조회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조회의 영어번역문을 근거로 하였다.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55면 참조.). 즉 속방조회의 원래 내용은 조선이 청의 속방이지만 內治와 外交는 自主이며, 조선과 청과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조약 체결 상대국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영어 번역문에서는 '내치와 외교가 자주'라는 사실이 "it(Corea) enjoys ***complete independence***." 즉 '완전한' 독립을 향유한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속방이라는 사실보다 내치·외교의 자주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 이는 또한 조선의 군주에 대해 "an ***independent*** monarch", 즉 독립 군주라는 표현을 쓰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 번역문의 내용은 원본보다 조선의 독립적 지위가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에 비겔레벤은 이 조회를 청의 내정간섭이 자행되던 당시 상황에서 '조선의 내치·외교 자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언문으로 보았던 것 같다.

5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옮김, 앞의 책 110-112면 「1892년도 외교 보고서」 No=16, 1892. 3. 9, 비겔레벤 → 칼노키 백작.

5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2), 光緖 18년 3월 11일, 2965a면.

국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도 동일한 문서를 상대국 원수에게 보내왔음을 지적하면서, 비겔레벤 공사가 조약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이전에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의 조약 내용과 비교하여 오스트리아와의 그것이 내용 차이가 없어야 함을 강조한 점을 들어 그의 속방조회 수령 거부를 비판하였다.[53] 사실 비겔레벤의 의도는 이전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획득한 권리, 이를테면 영사재판권이나 최혜국조관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스트리아가 조약 체결의 결과 과거 그들이 획득한 권리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겠으나, 권재형은 이를 근거로 과거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 체결 시에 한결같이 시행되었던 속방조회의 발송 및 수령 역시 비겔레벤의 논리대로라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논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겔레벤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으며, 이에 권재형은 이 사실을 본국에 보고하였고, 고종은 2월 24일자로 답신을 보내기를, 비겔레벤의 제안대로 정부 대 정부 간의 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조약 체결 시 행했던 지난 관례들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권재형 본인이 駐日 淸國公使인 李經方에게 비밀리에 이 사실을 타진하여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날로 권재형은 이경방을 찾아가서 이를 문의함과 동시에 이경방이 이홍장에게 이의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틀 뒤인 26일에 조선 정부는 이전의 관례대로 속방조회를 행하라는 내용의 답신을 받았다. 이후 권재형은 3월 11일에 이경방에게 그간 오스트리아와의 조약체결 교섭에 관한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밝히고 재차 속방조회의 처리를 문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54]

이를 계기로 그간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던 협상이 청국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홍장은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해 당시에 휴가 중이었던 원세개의 의향을 타진하였다. 원세개는 먼저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그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무역도 활발하지 않았으며, 오스트리아와 조선 간의 조약 체결 여부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반면 속방조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왜냐하면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에 대해 각국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이 조회를 근거로 반대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55]

---

53)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2), 光緖 18년 3월 11일, 2965a-b면.

54)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2), 光緖 18년 3월 11일, 2964b-2966b면.

그러나 만약에 오스트리아 측의 주장대로 정부 대 정부 간의 공문으로 대체시킨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것으로 그는 보았다. 우선 ① 조선 국왕이 보내는 國書의 등급이 정부의 公文과 동급으로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다음으로 ② 이전에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들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 이미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 별도의 조항을 만들 것이며 차후에 조선과 협상하는 나라들은 이번의 예를 인용하게 될 것인즉, 결국 이미 조약을 맺은 나라들에 보낸 속방조회 조차 수정 내지는 재검토되는 위험성이 생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56]

원세개의 이러한 우려는 조선 측이 오스트리아와 내통하여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심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그는 지난날 고종이 행한 여러 反淸政策을 미루어 생각해본다면 조선이 오스트리아와 짜고 속방조회 수령의 절차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상황에서 청국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조선 측에서 이를 기화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틈만 나면 舊例, 즉 조선과 청국 간의 상하관계를 상징하는 각종 의례 및 제도 등을 변경하고자 시도할 것이기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 조선이 딴 생각을 못하게끔 해야 하며, 따라서 조선에게 이전의 관례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해야 함은 물론이고 만약 오스트리아 측에서 끝까지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경우 조약 파기도 불사해야 한다는 뜻을 서한을 통해 4월 9일자로 이홍장에게 전달했다[57].

원세개의 조언을 접한 이홍장 역시 그의 견해에 십분 동의하였다. 이홍장은 과거 조선이 미국·독일·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중국의 중개를 거쳤는데 이후 이탈리아·러시아 등과 체결할 때부터는 계속하여 독자적으로 협상을 하였고, 이번에 오스트리아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공문으로조차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여 이경방의 보고가 있고서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다소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근래에 駐美公使 파견시에 제기된 另約三端에 대한 개정 요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진의는 중국의 속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58] 따라서 그도 원세개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제안처럼 속방조회를 정부 대 정부 간의 공문으로 대체한다면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진다

55)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3), 光緖 18년 4월 9일, 2966b면.
56)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3), 光緖 18년 4월 9일, 2966b-2967a면.
5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3), 光緖 18년 4월 9일, 2967a면.
5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 光緖 18년 4월 13일, 2963a-b면.

는 점에 유의하여[59] 속방조회 형식 변경의 문의에 대해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한편 조선 측은 이미 권재형이 이경방에게 알려서 어차피 청 측에 사건의 내용이 전부 알려졌을 것이므로, 정식으로 국왕의 이름으로 사안의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咨文을 3월 30일에 이홍장 앞으로 보냈다.[60] 자문은 4월 11일에 이홍장에게 도착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때에 원세개의 자문을 받고 조회 형식 변경의 불허 방침을 굳힌 상태였으므로 망설임 없이 당일자로 고종에게 회답을 보내어, 함부로 舊例를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조선이 그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선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61] 이홍장은 동시에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 4월 13일 및 19일 두 차례에 걸쳐 총리아문에 보고하였으며,[62] 이후로 속방조회 문제는 조선과 청국 사이에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

59) 이러한 지적은 속방조회 자체의 내용 및 朝·淸 관계의 성격을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속방조회의 내용이 "조선이 淸의 속국이지만 內治와 外交는 자주"라는 내용이므로, 결국 청과 조선의 상하관계는 의례적 관계, 다시 말해 조선의 국왕이 청 황제의 신하라는 형식에 불과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조·청 관계는 이러한 선언과는 달리 실질적인 내정간섭이 자행되고 있었지만, 그러한 내정간섭의 근거 자체가 상기한 의례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이 아닌, '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형식상으로 조선정부가 청국 정부와 상하관계로 규정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방조회의 발송 및 수령이, '속방'이라는 관계가 효력을 발휘하는 '君主'간이 아니라, '內治와 外交'에 관계되어 조선이 自主하고 따라서 청과 상하관계가 없는 '정부'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속방조회 자체의 효력이 있으나마나한 결과로 귀결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60)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1), 光緖 18년 3월 30일, 2964a-b면.

6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7-(2), 光緖 18년 4월 11일, 2971a~2972b면.

6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62, 光緖 18년 4월 13일, 2963a~b면 및 #1667-(2), 光緖 18년 4월 11일, 2971a~2972b면.

3. 조약의 체결 및 비준과 稱帝 문제

1) 협상의 타결과 속방조회의 처리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1892년 5월 29일자로 日本 東京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63] 타결된 조약 원안은 총 13관의 본 조약을 비롯하여 通商章程과 稅則 및 稅則章程, 그리고 附屬約款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상 이전에 여타의 서구 국가들과 맺은 조약들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64] 이것은 이미 영국과의 조약 체결 및 개정의 과정에서 불평등조약의 전형적 형태가 정착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각국들과의 조약 체결을 통하여 그 형태가 다듬어져서 더 이상 조약의 내용상 변화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약의 타결 이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 閔種默이 6월 1일자로 이 사실을 원세개에게 알렸고, 원세개가 이홍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이홍장이 6월 10일에 청 정부에 이를 알렸다.[65] 조선정부 역시 같은 날짜에 국왕 명의의 자문으로 이 사실을 청국에 전하였다.[66] 이후 駐日公使館 書記官으로 있던 金夏英이 타결된 조약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가지고 6월 16일자로 귀국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67] 조선정부는 전례대로 조약 및 그에 딸린 부속 문서 전부의 사본을 이홍장을 통해 청국 정부로 보냈으니,[68]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약의 협상 및 타결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속방조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것일까? 이 문제는 4월 19일자로 이홍장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 이후로 관련 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조약의 타결 이후 국왕 고종이 청에 보낸 咨文에서 짤막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3) 「高宗實錄」 29년 5월 29일.

64) 조약의 내용은 「高宗實錄」 29년 5월 29일자 및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144-197면 참조.

65)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96, 光緖 18년 6월 10일, 3001b면.

66)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95, 光緖 18년 6월 10일, 3001a면.

67) 「統署日記」 高宗 29년 壬辰 6월 16일.

6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696, 光緖 18년 6월 10일, 3001b면 및 #1704. 光緖 18년 6월 18일, 3012a면.

(전략) … 이에 本年(1892) 5월 29일에 해당 사절들(조선 측 협상대표 권재형과 오스트리아 측 대표 비겔레벤을 지칭)이 日本 東京에서 우리나라(조선)와 각국 사이에 이미 체결된 條約·章程들을 살펴보고 條約·通商章程·稅則을 논의하여 정하였으며, 아울러 (조선이 중국의)속국임을 선언하는 구절을 별도의 照會로 시행하여 이전의 관례에 부합하게 하였습니다. … (후략)[69]

이 내용만 살펴보면 결국 조선이 오스트리아를 설득하여 속방조회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다룬 연구들에서는 결국 오스트리아측이 속방조회 수령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말이 지어졌다고 서술되고 있으며,[70] 결과적으로 조선은 청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오스트리아와 조약 체결의 협상을 시행했음에도 청의 간섭이 두려워 비밀리에 진행하던 협상을 청측에 공개함으로써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스스로 무산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71]

물론 만약에 속방조회의 절차를 조약의 협상 및 체결 절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면 분명히 청의 속방으로서의 조선의 위치는 상처를 입을 것이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당시의 상황에서 조선이 오스트리아와 비밀리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속방조회 문제가 나왔을 경우 이것을 독단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주장대로 처리했다면 그 뒷감당이 가능했겠느냐는 데에 있다. 당시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간섭은 차관문제 및 趙大妃 조문 使節의 영접 문제 등을 비롯하여 절정에 달해 있었으며, 그때마다 고종과 측근세력들은 反淸政策을 추진했으나 결국 원세개와 청의 방해 및 압박에 부딪히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고종과 조선정부의 전략은 결국 철저한 비밀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비밀주의는 그러한 전략적 고민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런데 속방문제를 만약 덮어두고 조약을 체결한 것이 나중에 탄로나면 청측의

---

69)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704-(1). 光緖 18년 6월 18일, 3012b면 "(前略) … 玆於本年五月二十九日 該使等在日本東京 按照敝邦與各國已定約章 議定條約通商章程稅則 並將聲明屬國一節 另行照會 以符向例 … (後略)".

70) 權赫秀, 앞의 책, 266면 및 韓哲昊, 앞의 논문, 314면.

71) 韓哲昊, 앞의 논문, 314-315면.

개입으로 오히려 체결된 조약의 수정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결례를 저지름은 물론, 모처럼 독자적으로 추진한 외국과의 조약 체결의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청의 속국임을 보다 강하게 재확인시켜주는 결말로 끝날 확률이 높다. 물론 오스트리아에 양해를 구하고 속방조회를 교환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애초에 군주간의 교류라는 예절 내지는 격식의 문제로 거부했던 오스트리아 측에서 과연 그런 방식에 동의할지도 의문일뿐더러, 모처럼 속방조회를 폐기하거나 형식을 변경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한다면 자주독립을 세계에 알린다는 의도가 전혀 무색해질 것이었다.

따라서 고종은 어차피 이 문제를 계속 숨기고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낫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사실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72] 만약 청측에서 오스트리아의 제안, 즉 정부 대 정부 간 공문교환이라는 대안을 받아들인다면 청의 속방이라는 구속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과 차이가 없게 될 것인즉 조선 측으로서는 이러한 의견타진이 '밑져야 본전'이었을 것이다. 또한 비밀리에 진행되던 협상이 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자 이를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자문을 구하는 모습은 원세개나 이홍장 등이 조선에 품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알아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조선 국왕의 모습으로 인해 경계심이 풀어져서였을까? 원세개와 이홍장은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조선 국왕의 해당 건 관련 보고도 없는 가운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약이 타결되고 조선국왕이 그를 알리는 咨文을 보내면서 짤막한 한 마디로 속방조회를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조회의 사본을 청에 보냈는데, 문제는 이 조회를 정확하게 언제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각국에 보낸 조회들의 말미에 적힌 날짜는 국왕이 이 조회를 발행한 일자일 뿐, 그것

72) 오스트리아가 속방조회 수령을 거부한 것은, 물론 그 실제적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주간의 교류예절 및 격식의 문제였으나,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다만 '오스트리아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비칠 확률이 컸다. 원세개와 이홍장이 우려한 바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으며, 따라서 설령 결과적으로 속방조회 수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스트리아가 속방 인정을 한때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게 되고, 이것이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 정확하게 언제 상대국 원수에게 수령되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73]. 물론 이전의 조회들의 경우 상대국에서 수령을 거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번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즉 오스트리아에 보낸 「送奧國照會」의 후반부에 표기된 날짜는 1891년 11월 25일로,[74] 권재형을 전권대표로 임명하면서 고종이 처음 조회를 발행한 날짜로 되어 있다. 즉 이듬해에 이 조회를 권재형이 전달하려다 실패한 뒤에 다시 재전달에 성공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 조회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다.[75] 청국에 보냈다는 조회 역시 이것의 사본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청측에서도 이 조회만 가지고 조회의 재전달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홍장의 마지막 보고일자인 4월 19일부터 조약이 타결된 5월 29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조선정부는 비겔레벤의 설득에 성공하여 원래 보내려고 했던 조회를 그대로 오스트리아 황제 명의로 수리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겔레벤 자신의 태도가 완강하였다. 그는 본국 외무성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속방조회를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보내는 일은 비록 문화적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하였다.[76] 그런 입장에서 조선정부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문서의 형식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재차

---

73) 「國照會謄錄」(古5710-11) 참조. 참고로 각국에 조회를 보낸 날짜를 살펴보면, 미국은 1882년 3월 28일, 영국은 同年 4월 14일, 독일은 同年 8월 5일이고, 이탈리아는 1884년 윤5월 4일, 러시아는 同 15일, 프랑스는 1886년 5월 3일로서 대부분 조약 체결의 직전에 해당하는 날짜로 되어있다.

74) 「國照會謄錄」(古5710-11) 「送奧國照會」 참조.

75) 물론 혹시 이후에 새롭게 조회를 만들어 보냈는데 조회를 모아놓은 「國照會謄錄」에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회를 모아놓았다는 것은 조회를 보내는 일이 일단락되었으며 앞으로 조회를 보낼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청이 조선에서 입지를 상실하게 되어 타력에 의해서긴 하지만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자 그때까지의 속방조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國照會謄錄」은 편찬 기관이 承文院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승문원이 갑오개혁의 결과로 1895년에 혁파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직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스트리아로 보낸 조회문 역시 여기에 수록된 하나뿐이며, 그것이 수용되었건 거부되었건 간에 날짜나 형식을 달리한 별도의 조회를 만들어 보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7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옮김, 앞의 책, 110-112면, 「1892년도 외교 보고서」 No=16, 1892. 3. 9, 비겔레벤 → 칼노키 백작.

황제 앞으로 보내는 것을 용인해줬다면 그 자신의 표현대로 '군주간의 교류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만약 조선정부가 이러한 오스트리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통해 원안을 관철시켰다면 그러한 과정이 청 정부에 보고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즉 재차 오스트리아 공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진정으로 청의 의도에 충실하여 속방조회를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그러한 논의를 청에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고종은 애초에 오스트리아 공사의 수령 거부 의사를 전해 듣고는 그를 재차 설득하려는 시도를 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곧바로 청 정부에 판단의 책임 문제를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속방조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의도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홍장의 회답 이후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조선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청측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 협상이 타결되고, 오스트리아 공사에게 한때 거부당한 조회의 원본을 그대로 청에 전달하면서 의례상 '조회를 했다'는 간략한 언급만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본다면, 조선 측이 마지막의 속방조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측에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77] 속방조회의 내용 자체는 비겔레벤이 조회 문제를 본국에 보고하면서 권재형이 보낸 조회의 영어 번역문을 외상 칼노키 백작에게 이미 보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즉,[78] 결국 고종의 이름으로 보낸 조회가 오스트리아 황제의 이름으로 수령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라는 어디까지나 극히 형식적인 문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

77)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논증은 오스트리아 측의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즉 속방조회의 수령을 과연 끝내 거부했는지의 문제는 조선과 중국 측의 사료만으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스트리아의 기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의 견해는 그러한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옮김, 앞의 책, 110-112면, 「1892년도 외교 보고서」 No=16, 1892. 3. 9, 비겔레벤 → 칼노키 백작.

물론 어디까지나 정황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이 오스트리아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전 관례대로 관철시키고 그 사실을 기록에서 누락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 즉 조약의 비준 시에 논의되는 稱帝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면 그랬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된다.

2) 비준 과정과 稱帝 논의

양국 간의 조약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이것이 실효를 발하려면 아직 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전제군주국인 조선의 경우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입헌군주체제의 국가들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조약의 타결에서 조인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과 영국 역시 조선과의 통상조약 타결 후 조약의 개정 과정을 거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준서를 교환했던 것이며, 오스트리아 역시 어떠한 조항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나 의회의 승인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협상 타결부터 근 1년이 지난 시점인 1893년 5월에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비준이 이루어졌으며,[79] 이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조선과 상호간에 비준서를 교환하도록 전권사신을 조선에 파견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파견한 전권사신은 해군제독인 베커(Alois Ritter von Becker; 白巨)로서, 그는 먼저 이미 오스트리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으로 가서 나가사키 지방에서 조선의 독일공사인 크린(Ferdinand Krien; 口麟)에게 비준서 교환차 조선 방문을 예고하는 내용의 조회를 보냈다.[80] 당시 독일이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조선에서 오스트리아의 이해는 독일을 통해 대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베커 일행은 8월 24일에 제물포에 도착하여 4명의 무관을 대동하여 상경해서 25일부터 3일간 독일공사관에 체류하면서 조약의 비준 업무를 수행하였다.[81] 조선 측에서는 비준서 교환업무와 관련하여 당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을 맡고 있던 南廷哲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베커와의 비준서 교

79) 「奧約議案」(奎23465) 「批准文憑」 참조.

80) 「奧約議案」(奎23465) 「奧使出來時德使口麟照會」.

81) 「統署日記」 高宗 30년 癸巳 8월 23일-28일.

환 임무를 맡겼으며,[82] 비준서 교환은 8월 26일에 행해졌다.[83] 베커 일행은 상호 간의 친선의 증표로 서양제 총 20자루와 탄약 세 상자를 선물로 바쳤으며,[84] 비준서 교환이 끝난 이후 고종은 集玉齋에서 친히 전권사신 베커를 접견하여 오스트리아 황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었다.[85] 또한 남정철은 조약의 비준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베커를 연회에 초청하였고 베커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86]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선-오스트리아 통상조약은 비준의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전까지 서양 제국들과 맺은 대다수 조약들의 경우 그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부여될 뿐 논의가 끝나고 양국에서 비준을 마친 뒤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 자체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반면,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의 경우 이 비준서 교환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니, 곧 조선 국왕의 稱帝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1897년 大韓帝國의 성립에 따른 稱帝와 관련한 駐韓日本公使館의 보고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897년 大韓帝國 선포에 따른 고종의 황제 즉위에 대하여 駐韓 辨理公使인 가토오 마스오(加藤增雄)가 外務大臣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에게 기밀사항 몇 가지를 적어 올린 것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 1893년 조선-오스트리아 조약의 비준 과정에서 조선 측 전권대표인 남정철과 오스트리아 대표 베커 사이에 조선 국왕을 황제로 칭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는 것이다.[87]

사실 1대 1의 관계로 조약을 체결함에도 두 나라 군주의 호칭을 보면, 오스트리

82) 「奧約議案」(奎23465) 「全權字據」.

83) 「奧約議案」(奎23465) 「換約批文」.

84) 「統署日記」 高宗 30년 癸巳 8월 27일.

85) 「高宗實錄」 및 「承政院日記」 高宗 30년 8월 27일. 참고로 「高宗實錄」에는 오스트리아측 전권대표로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고종을 접견한 사람을 비젤레벤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高宗實錄」이 일제시기에 「承政院日記」·「日省錄」 등 사료를 모아 편찬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로 보인다. 비젤레벤은 협상 단계에서는 오스트리아 대표였으나, 비준서 교환 단계의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으며, 「統署日記」를 포함한 절대 다수의 기록에서는 오스트리아 측 대표를 베커로 표기하고 있다.

86) 「奧約議案」(奎23465) 참조.

8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機密 제71호, 1897년 10월 25일 「皇帝稱號ノ起因竝ニ其承認方ニ關スル意見上申」. 이는 일찍이 李玟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李玟源, 1989 「大韓帝國의 成立過程과 列强과의 關係」, 「韓國史硏究」, 64면).

아의 경우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大奧國 大皇帝 兼 蒲希米亞大君主 享加利大傳敎君主; the Emperor of Austria, King of Bohemia, etc, and Apostolic King of Hungary)인 반면 조선은 대조선국 대군주(大朝鮮國 大君主; the King of Corea)로서 서로 대등하지 못하였다. 이는 청의 속방이라는 굴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나, 당시 조선 정책의 기조가 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려는 '反淸'을 기조로 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상호 불평등한 위상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조선의 국왕이 황제를 칭하여 상호관계를 명실상부하게 대등한 것으로 설정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논의'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稱帝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 反淸政策들이 청의 강압으로 인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청의 개입으로 결국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정세 인식이 조선으로 하여금 稱帝를 최종적으로 선포하지는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청의 간섭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할 경우 그 논의과정 역시 명시적으로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보고서 역시 '極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시 稱帝 문제의 논의는 매우 극비리에 조심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稱帝 문제의 경우 그 확실한 논의 여부 및 진행 과정은 기본적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그 과정의 편린 내지는 일부분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있다. 즉 칭호 등과 같이 황제국의 격식에 관련된 용어들의 사용 여부이다. 조약 비준시 조선과 오스트리아 측 전권대신들 간에 왕복한 문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황제국의 격식을 원용한 부분이 종종 등장한다.

A. (전략) … **朕**이 등극한지 30년 되는 해, 大朝鮮 開國 502년, 곧 中國 光緖 19년 … (후략)[88]

B. 공손히 啓합니다. 삼가 우리 **大君主陛下**의 **勅旨**를 받들어 … (후략)[89]

---

88) 「奧約議案」(奎23465) 「換約批文」 "(前略) … 朕御極之三十年 大朝鮮開國五百二年 卽中國光緖十九年 … (後略)".

89) 「奧約議案」(奎23465) "敬啓者 欽奉我大君主陛下勅旨 … (後略)".

A는 비준서 교환에 대해 고종이 그를 승인하면서 내린 「換約批文」 중 마지막 대목에 批文의 작성 및 반포 일자를 밝히며 나오는 표현이고, B는 비준서 교환이 끝난 뒤 조선 대표 남정철이 오스트리아 대표 베커에게 고종의 알현을 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목이다. 우선 A부터 살펴보면, 최고통치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대명사 중에서 황제만이 사용가능한 '朕'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사실 이 '朕' 용어의 사용은 그 이전 시기인 1887년에 朴定陽을 駐美全權公使로 파견할 때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에게 보낸 國書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90] 따라서 황제국 체제에서 사용가능한 '朕'을 쓴 것은 고종이 反淸自主化 정책의 일환으로 공사파견을 시도하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에 있어서는 위에 든 예말고도 고종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는 대부분 '朕'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 사용이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황제국 체제의 격식에 맞는 용어 사용은 B에서도 보인다. '勅'이라는 용어 역시 황제가 내리는 문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國書 수용과 관련하여 '皇'·'勅' 등의 용어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대질서 하에서 제후국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었으며, 따라서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비준 과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썼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 국체가 황제국을 지향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면 B에 나오는 '大君主陛下'라는 호칭이다. '陛下' 역시 사대질서 하에서 황제에게만 허락된 호칭으로, 제후의 경우 폐하 대신에 '殿下'를 사용하며, 전하보다 한 단계 낮은 호칭으로는 '邸下'가 있다. 일반적으로 陛下는 황제와, 殿下는 국왕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의 경우 1897년 고종이 稱帝를 선포하기 이전의 단계로 1894년 12월에 제후국의 대군주 호칭에 황제국 용어인 폐하를 붙인 '大君主陛下'라는 과도기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다[91]. 해당 조치의 시행 시점 상으로 볼 때, 그간 이 호칭의 사용은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패하여 한반도에서 물러감으로 인하여 조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90) 「舊韓國外交文書」 제10권, 「美案」 1, #460.

91) 1894년 12월 17일에 總理大臣 김홍집 이하 내각의 각 대신들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主上殿下를 大君主陛下로, 王大妃殿下를 王太后陛下로, 王妃殿下를 王后陛下로 하고, 王世子邸下를 王太子殿下로, 王世子嬪邸下를 王太子妃殿下로 하며, 箋文을 表文으로 개칭하자고 제의하여 국왕의 재가를 얻었다(「高宗實錄」 31년 12월 17일).

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 '大君主陛下'라는 용어는 그보다 이전인 189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내부 문건인 『李案』을 보면 이미 해당 아문 내부적으로는 이 호칭이 1892년 하반기부터 통용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92] 이 당시까지만 해도 『李案』의 성격상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라는 정부 내 한 부서 내에서만 통용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듬해인 1893년으로 넘어가면서 『承政院日記』 등의 국가 차원의 공식 관찬기록에서도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즉 1893년 1월 1일에 고종이 각국 공사들을 접견하는 내용의 기사에서 역시 이 '大君主陛下'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93]. 그러나 이 역시 국가 간에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러던 것이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에 따른 비준서 교환 과정에서 이 호칭이 쓰임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최초로 국제적 속성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물론 조약 원문 자체보다는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겠지만, 비준교환시의 양국 간의 왕복 문서 역시 공식적인 외교문서의 한 부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선 정부 내의 한 衙門이라는 단위는 물론 조선이라는 국가 단위를 넘어 처음으로 국가 간의 국제적 성격을 지니는 문서에 황제국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표현인 '大君主陛下'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었다.

---

92) 「李案」(奎20952)은 당시 조선정부에서 외국인고문으로 고용한 미국인 르젠드르(Le Gendre; 李善得)와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 具禮)가 內務協辦의 자격으로 1890년(高宗 27) 6월부터 1893년(高宗 30) 12월까지 약 3년반에 걸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督辦들(閔鍾默, 趙秉稷, 南廷哲)과 왕복한 문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정식명칭은 「李案 具案附」이다. 이 문서의 1892년 하반기 이후 부분을 살펴보면, '大君主陛下'는 물론 '聖上陛下', '陛下' 등 황제에 대한 호칭을 암시하는 용어들이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듬해인 1893년으로 넘어가면 同 문건에서 '東宮邸下'의 호칭 역시 '東宮殿下'로 바뀌기도 한다.

93) 「承政院日記」 高宗 30년 1월 1일. 이전에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한 뒤 프랑스 공사가 고종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는 '陛下'가 생략된 '大君主' 호칭만을 사용하였으며(「承政院日記」 高宗 25년 5월 19일), 「承政院日記」에서 '大君主陛下' 호칭이 사용된 것은 이 기사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공사가 고종을 지칭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록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 주한 외국공사들이 고종을 지칭하는 호칭 자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폐하나 전하 등과 같은 호칭의 등급 문제는 어디까지나 동아시아 사대질서의 문제일 뿐, 서구인들의 입장에서는 고종에 대한 존칭은 조선 측 기록에 '陛下'로 기록된 경우나 그렇지 않는 경우나 다같이 'Your Majesty'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약 체결 이후 비준서의 교환시에 작성된 외교문서에서 나타나는 호칭 등의 격식을 살펴볼 때 그것은 분명 일정부분 조선의 황제국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양측 대표들 간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일정부분 존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직접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속방조회의 불분명한 처리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1890년대 초반 조선정부가 시행한 대외정책의 속성 내지는 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이전시기에 청의 내정간섭에 반발하여 反淸自主 정책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다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이 시기에 청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추진되었고, 당장의 큰 효과를 얻으려 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화를 당하기보다는, 가시적 성과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실리적인 저항을 추구했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조약 체결이 갖는 정치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맺 음 말

이상에서 조선-오스트리아 간 통상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그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조약 체결의 교섭·비준 과정을 국내정치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았다. 요컨대 조약 체결의 배경은 반청자주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외교다변화라는 조선 측의 대외정책 기조와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오스트리아의 대외정책 기조가 상호 접점을 이루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오스트리아 상인에 대한 배려라는 목적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 측의 속방조회 문제에 대한 불투명한 처리와 더불어 조약의 비준 과정에서 황제국의 격식에 맞는 각종 칭호들의 사용에서 그 흔적이 보이는 조선 국왕에 대한 稱帝 논의는, 1890년대 초반 조선이 추진한 反淸自主化 정책이 은밀하고 소극적인, 그러나 실리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방향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 오스트리아와 비준서 교환을 하며 고종을 황제로 칭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불과 몇 개월 전인 1893년 3월 중순에 고종은 충청도 報恩에서 集會를 가지며 세력을 키우던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청에 군대를 요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94] 여기서 당시 反淸政策이 가졌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는데, 즉 청의

압박은 싫어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청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1882년 壬午軍亂으로 청의 간섭 의도를 파악하기 이전에 고종과 정부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도 유사시에는 청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판단은 당시 국제관계가 가지는 속성 및 힘의 논리 등에 대해 여전히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열강들 간의 전쟁터로 내주는 결말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당시의 反淸政策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적인 의미라는 한계에서나마 1890년대 초반에도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은밀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수단으로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조선-오스트리아 통상조약 체결이 당대에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양국 간의 조약체결 협상 자체가 주로 두 나라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타개라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게 되자 양국 간의 관계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그다지 긴밀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95]

논문투고일(2009. 10. 5), 심사일(1차: 2009. 11. 17, 2차: 2009. 11. 28), 게재확정일(2009. 12. 5)

94) 『日省錄』 高宗 30년 5월 25일. 이에 대해 조선측의 請兵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원세개에 의한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李泰鎭, 1999 「1894년 6월 淸軍 朝鮮 출병 결정 과정의 眞相 — 조선정부 자진 요청설 비판 —」, 『韓國文化』 24).

95)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후 러시아와의 긴장관계가 완화되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고,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도 청일전쟁 이후 청국 세력이 한반도에서 축출되자 反淸政策의 일환으로 타국과 조약 체결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統署日記』

『國照會謄錄』(古5710-11)

『京畿關草』(奎18067)

『仁川港關草』(奎18075)

『李案』(奎20952)

『奧約議案』(奎23465)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硏究所 편, 1967『舊韓國外交文書』 제1~21권.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舊韓末條約彙纂』 上·中·下卷.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淸季中日韓關係史料』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1『데니문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옮김, 1992『韓國近代史에 對한 資料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1885~1913)』, 신원문화사.

Spencer J. Palmer, 1963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The Period of Growing Influ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宋炳基, 1985『近代韓中關係史硏究: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檀國大學校 出版部.

具仙熙, 1999『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혜안.

權赫秀, 2000『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硏究』, 백산자료원.

許東賢, 2000『近代韓日關係史硏究』, 國學資料院.

김용구, 2006『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J.M. Roberts, 1989 *Europe 1880~1945; 2nd Edition*, LONGMAN.

權錫奉, 1963「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歷史學報』 21.

宋炳基, 1984「金允植·李鴻章의 保定·天津會談」(上)·(下),『東方學志』 44·45.

李炳天, 1985「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 서울대 박사학위논

문.

펜들러, 1990「19C와 20C 轉換期의 韓國에 관한 오스트리아·헝가리 外交資料」, 『韓國 北方關係의 政治外交史的 再照明: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 제6집』.

具仙姬, 1999「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한국사』38, 국사편찬위원회.

金賢淑, 1999「韓國 近代 西洋人 顧問官 硏究(1882~1904)」,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李泰鎭, 1999「1894년 6월 淸軍 朝鮮 출병 결정 과정의 眞相 — 조선정부 자진 요청설 비판 —」,『韓國文化』24.

禹澈九, 2000「유럽 각국과의 조약 체결」,『한국사』37, 국사편찬위원회.

韓哲昊, 2001「開化期(1887~1894) 駐日 朝鮮公使의 파견과 외교 활동」,『韓國文化』27, 313-315면.

吳瑛燮, 2003「東農 金嘉鎭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韓國思想史學』20.

Abstract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Austria-Hungary (朝墺修好通商條約) in 1892

Min, Hoi Soo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Austria-Hungary(1892) had two aims. First one, for Korea, was to enter into treaties with many countries, as a means to resist Chinese interference. Second one, for Austria, was to contain Russian promotion of influence in the Asia, especially in Korea.

The negotiation of the treaty proceeded confidentially to avoid Chinese interference. Finally, the Austrian representative refused to accept the despatch from Korean King to Austrian Emperor declaring that Korea was a tributary of China (Sokbang Johoe; 屬邦照會). Chinese government ordered Korea to carry out the acceptance of the protocol by Austria at any cost. Korean government pretended to follow Chinese directions, but seemed not to have settled the matter actually. And there seemed to have been arguments on the use of the appellation "Emperor" by Korean King at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which can be presumed from the use of many empire terms and appellations.

In conclusion,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Austria implies that Korea was making secret and small, but practical resistance against Chinese interference in early 1890s.

Keywords: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Austria-Hungary (朝墺修好通商條約), Sokbang Johoe (屬邦照會), ratification, the use of the appellation "Emperor" (稱帝), Chinese interference